

(1) 안전점검결과와 적정성 검토에 대한 협회 의견(토목현장 사례)

1. 공사명	○○공사	
2. 제출번호	SB-2021-○○○○○	
3. 발주청	○○기관	
4. 시공사	○○건설	
5. 검토결과	부적정	
구분	지적 내용	협회 확인 및 검토 사항
1	안전점검책임기술인 등급 및 교육이수여부 확인 불가 (경력확인서, 교육이수증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에서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및 교육이수여부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2	점검대상물의 전체적인 시공현황 및 위험요소(위험요소 프로파일 활용) 미제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에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위험요소 제시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시공사에게 설계안정성검토보고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제공받지 못함.
3	점검대상물의 설계도서(구조계산서, 설계도면 등) 확인 불가	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시 가설휴막이에 대한 구조계산(안정성검토) 등을 수행하지 않음. 시공사에게 보고서에 수록된 설계도면 외에 제공받지 못함.
4	품질관리자 등급 및 자격, 품질시험실 사진대지, 점검대상물 관련 품질시험계획 및 이행내역 확인 불가	품질관리계획 관련 자료는 “품질관리책임자의 책임과 권한”, “업무분장” 등 소량의 자료만 제공 받았으며, 품질시험실은 운영하지 않고, 품질시험 필요시 외부업체에 맡기다는 답변을 받음.
5	공사장 주변의 구체적인 안전조치계획 확인 불가	시공사에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공받지 못함.
6	점검대상물의 작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임시시설 설치계획 확인 불가(관련설계도면,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 등)	시공사에게 보고서에 수록된 설계도면 외에 제공받지 못함. 안전관리계획서 제공받지 못함.
7	점검대상물의 설계도서(구조계산서, 설계도면 등) 확인 불가 점검대상물의 구조안정성 검토 결과를 확인하였는지 확인 불가	본공사의 설계 및 시공시 가설휴막이에 대한 구조계산(안정성검토) 등을 수행하지 않음. 시공사에게 보고서에 수록된 설계도면 외에 제공받지 못함.
8	점검대상물의 설계도서(구조계산서, 설계도면 등) 확인 불가	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시 가설휴막이에 대한 구조계산(안정성검토) 등을 수행하지 않음. 시공사에게 보고서에 수록된 설계도면 외에 제공받지 못함.
9	계측계획, 현장 안전 모니터링 수립계획 및 검토 여부 확인 불가	시공사에서 계측은 수행하지 않아 제공받지 못함.
10	상기 보완 사항 참조하여 각 항목별 점검/검토/확인 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명시하여 명확하게 제출(계측 보고서, 안전관리자 발주처 승인 자료,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등)	계측보고서 제공받지 못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에서 안전관리자 발주처 승인자료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2) 안전점검결과와 적정서 검토에 대한 협회 의견 (건축현장 사례)

점검 차수		천공기 1차, 2차	검토결과	부적정
구분	지적 내용		협회 확인 및 검토사항	
1	안전점검책임기술인 등급 및 교육이수여부 확인 근거 누락(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에서 안전 점검책임기술인 등급 및 교육이수 여부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입찰 참여시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의 등급 및 교육이수 자료를 모두 제출하므로, 현재 업체 선정 방식을 고려하면, 유자격자가 책임기술자로 참여하는 것이 이미 검증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2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계획 확인 불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안전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 등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계획 검토 내용 추가)		점검시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 상 일반적인 내용만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 공종의 점검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안전관리계획서가 완성되어 보완조치함.	
3	천공작업과 관련된 임시시설 설치계획 근거 누락(안전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등)		임시시설 설치계획 등이 명기된 반입계획서(시공계획서) 등을 부록으로 첨부하였으나 근거 누락으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됨.	
4	안전관리계획서상 계측계획, 현장 안전 모니터링 수립계획 확인 불가 (안전관리비 내역서 추가 및 해당 없는 경우「해당 없음」명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점검기관이 아닌 시공사의 업무 내용임. 해당 공종의 점검 시점에서 안전관리계획서가 미완성 상태인 것을 안전점검 보고서의 지적내용으로 통보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됨. 해당 공종의 점검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안전관리계획서가 완성되어 보완조치함.	

점검차수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1차, 2차	검토결과	부적정
구분	지적 내용		협회 확인 및 검토사항	
1	계획서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 점검한 확인근거 누락 - 계획서와 현장상황을 대비하여 점검 필요 (안전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 등)		해당 항목 한가지에 대해 점검 누락도 아니고, 근거 누락을 이유로 검토 결과를 ‘부적정’으로 판정하였음.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7조3항에서 ‘부적정’은 시공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 또는 점검결과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판정에 대한 합리적인 상세 기준 제시가 필요함.	